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사
문

국무총리 지시 제 20 호 (70-2012) 1975. 12. 15.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주택건축 허가 절차 개선방안

1. 국민생활과의 관계가 밀접한 일반주택의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는 건축허가 신청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 제반절차와 조치사항이 번잡하므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소지가 되고 있어 주택건축 허가 절차의 간소화 조치 등 건축 행정의 쇄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정부에서는 76. 1. 1 부터 76. 6. 30 까지 6개월간 전주시, 수원시, 진주시등 3개 도시에 대하여 다음 "주택건축 허가 절차 개선방안" 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후에 76. 7. 1 부터 전국에 확대실시코자 하니 건설부장관은 동 개선방안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지침, 시행준비조치 및 경과조치등 실시요강을 작성, 관계기관과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얻도록 할것이며 관계기관은 그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3. 특히, 동 "주택건축 허가 절차 개선방안" 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시장은 동 실시과정에서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

국무총리 지시 제 20 호

1975. 12. 15

도출하고 그 대책을 작성, 울별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할것이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동 개선방안을 보완하고 전국 확대
실시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4. 또한, 동 "주택건축 허가절차 개선방안"에 의한
전국확대실시 시기인 76. 7. 1 이전이라도 각 시도지사는 관할 시, 구
군중 미리 시범실시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설계감리와
허가등 절차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탁대행하게 하고 건축주가
허가관청에 출입할 필요가 없도록 함.

나. 건축허가 관서가 수행하던 허가신청서의 검토, 준공검사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대행처리하게 하고, 건축사가 허가신청서의
검토보고서 및 준공검사 조사서등을 건축허가 관서에 제출하면
건축허가 관서는 동 보고서 및 조사서등에 의거 건축허가 및 준공
검사등의 서분을 행함. 다만 허가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공검사(현장검사)를 실시함.

국무총리 지시 제 20 호

1975. 12. 15

- 다.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등에 있어서 관계부서의 협의 또는 검사를 대폭 생략하는 대신 건축사가 협의 또는 검사부서에서 미리 작성 공표한 점검표 (check list)에 의거 검토하게 함.
- 라.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등을 위한 제반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른 건축사의 위법행위 및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5인 이상의 연대책임하에 동 업무 행위를 하게함.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대책임을 진 건축사 전원에게 형사적 문책을 함께 동시에 면허취소등의 조치를 함.
- 마. 건축공사 현장에는 건축허가 관서의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외에는 출입을 금함.
- 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대지조성을 하기 위하여는 토지형질 변경허가 이외의 타 절차는 폐지함.
- 사. 건축허가나 준공검사시에는 불합리한 조건부여 또는 첨부 서류는 폐지함.
- 아. 본 개선방침에 의한 주택건축 절차를 건축주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 뒷면에 주택건축 절차 안내문을 첨기함. 끝.

국무총리 지시 제 20호

1975. 12. 15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내무부, 국방부,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나 (1-11)